

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07.6.7>

<p>※제 호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</p> <p>※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</p>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 : )	
이륜자동차번호		배기량 또는 정격출력	
변경사항	변경 전		
	변경 후		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p>			
<p>※구비서류</p> <p>1.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</p> <p>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p> <p>3. 이륜자동차번호판(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)</p>			

※신고안내

신고하는 곳	읍·면·동	처리기간	즉시
수수료	없음		
<p>○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).</p> <p>·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(명칭)변경시 : 15일이내</p> <p>·매매 : 15일이내, 증여 : 20일이내, 상속 : 3일이내</p> <p>–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2항제2호).</p>			

33331-06311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